

제31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 회 기 : 2022. 11. 1.(화)~11. 11.(금)(11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의 사 일 정	비 고
11. 1.(화) 10:00	개 회 식	
	1. 제31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 5.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9.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장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11. 2.(수) 10:00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①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②자치행정과 ③공보전산과 ④복지정책과	본회의장
11. 3.(목) 10:00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치행정국] ①사회복지과 ②여성청소년과 ③세무과 ④회계과 ⑤민원봉사과	본회의장
11. 4.(금) 10:00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문화국] ①일자리경제과 ②문화체육과 ③관광휴양과 ④환경보호과	본회의장

일 시	의 사 일 정	비 고
11. 5.(토) ~ 11. 6.(일)	휴 회(공휴일)	
11. 7.(월) 10:00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문화국] ①전략사업과 ②농업축산위생과 /③보건소 ④환경사업소 ⑤시설사업소	본회의장
11. 8.(화) 10:00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전도시국] ①안전총괄과 ②교통행정과 ③공원녹지과 ④도로과	본회의장
11. 9.(수) 10:00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전도시국] ①도시재생과 ②건축과 ③투자개발과 /④평생교육원	본회의장
11. 10.(목) 10:00	1. 조례안 등 심의	위원회의실
11. 11.(금) 10:00	1. 조례안 등 최종 의결	본회의장

2022. 11. 1.(화) 10: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 제 316회 임시회 -



박인범의원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민선8기 시 집행부와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100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의회도 집행부도 상호 소통과 협치의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9월 26일부로 우리 동두천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은, 박형덕 시장님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하나로 힘을 합쳐 시민의 염원을 실현해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마음과 힘을 모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는 길을 활짝 열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박형덕 시장님께 두 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동두천에 무공수훈자 공적비를 건립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미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에 무공수훈자들의 공헌을 기리는 공적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무공수훈자 공적비가 없는 곳은 우리 동두천을 포함한 6개 시·군뿐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비석이란, 돌에 이름을 새겨넣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잊지 말자는 굳은 다짐의 확고한 상징입니다.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서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셨던 무공수훈 군인들이 계셨기에, 비로소 오늘날의 우리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헌신과 공적을 영원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돌에 이름을 새겨 넣는 비석이란, 기록과 기억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손만대 그분들의 공헌을 지워지지 않게 기록하는 한편, 모두가 그 희생과 헌신에 깃든 애국심을 기억하고 따르자는 뜻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우리 동두천에 아직 무공수훈자비가 없다는 사실은 조금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자타공인 국가안보를 위해 70년 넘게 희생해 온, 국가안보의 첨병인 애국도시 동두천에 무공수훈자비가 아직도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은, 저 하나만의 심정이 아닐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장님께서서는 동두천시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의회와의 사전 논의를

거쳐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재정자립도 경기도 최하위인 우리 동두천은, 국·도비 확보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입니다. 국가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도비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 응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국·도비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확보되는 국·도비에 맞춰서 우리 시비도 못지않게 들어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상당수 공모사업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시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그에 따

른 시비 부담을 생각한다면, 공모사업 신청은 그만큼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우리 시비 일부가 공모사업에 투자된다면, 그만큼 시민들을 위한 다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모사업이라고서 덮어놓고 신청하는 것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연 그 사업들이 우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앞으로 모든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취합과 1차 검토 후, 반드시 의회와 사전 논의를 거치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해당 사업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는데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도움이 되는지, 시민의 대표이자 대변자인 의원들의 검토와 조언을 반드시 반영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두천시민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면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
니다. 아울러,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고달플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모두가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주변을 살펴보면 좋
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11월 1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박 인 범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2. 10. .

제출자 : 동두천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2. 주요내용

- 대상목록

부서명	사업명	출연근거	출연 기관	예산액(천원)		
				2023	2022	증감
계	6개			640,196	550,449	89,747
세무과	지방세 발전기금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한국 지방세 연구원	6,196	5,449	747
일자리경 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 제7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조례」 제6조	경기신용 보증재단	300,000	500,000	△200,000
	중소기업 특례보증		경기신용 보증재단	200,000	0	200,000
	소상공인중 소기업특례 보증수수료		경기신용 보증재단	50,000	0	50,000
	중소기업 육성기금	· 「지역중소기업법」 제8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경기도	74,000	35,000	39,000
농업 축산 위생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 기금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경기도	10,000	10,000	-

1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세무과)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 주요내용

- 사업명 : 지방세 부과 및 징수(지방세연구원출연금)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산출기초
 - 출 연 액 : 6,196천원(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
 - 산출근거 : 51,631,039천원(21년도 보통세 결산액) × 1.2/10,000 = 6,196천원
-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21년) 보통세 결산액의 0.012%를 매년 3.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조사 및 평가에 대한 출연금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출자·출연 기관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증감 액	비 고 (산출근거)
출연금	한국지방세 연구원	6,196	5,449	747	21년 결산보통세 × 1.2/10,000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 소상공인 자금조달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00,000천원을 출연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추천한도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지원용도 : 경영안정지원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출자·출연기관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산출근거)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300,000	500,000	△200,00 0	

☐ 관계법령발췌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5.1.×개정 2005.10.3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개정 2012.5.11.>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특례보증)

-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안이유

-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0,000천원을 출연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업체
- 지원내용
 - 추천한도 : 업체별 3억원 이내
 - 지원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출자·출연 기관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증감 액	비 고 (산출근거)
출연금	경기신용보 증재단	200,000	0	200, 000	

☐ 관계법령발췌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 제안이유

-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위축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0,000천원을 출연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2023년도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2023년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청 업체
- 지원내용 : 신규 접수된 특례보증 수수료 전액 지원(업체당 1회, 최초 1년분)
※ 특례보증 수수료율 : 대출금의 1% 이내
- 지원용도 : 경영안정지원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출자·출연기관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산출근거)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50,000	0	50,000	

□ 관계법령발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5.1.×개정 2005.10.3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개정 2012.5.11.>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특례보증)

-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 ① 시장은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의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5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금」 출연금
[일자리경제과]**

□ 제안이유

-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74,000천원을 경기도에 출연하고자 함
- 출연실적은 「기업SOS시스템 운영성과」 평가 시 반영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령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업체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중소기업(최대 5억원 이내), 소상공인(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사회적경제기업(2억원 이내)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업체당 최대 30억원 이내
- ※ 자금용도 및 기업형태에 따라 지원한도 상이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출자·출연기관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산출근거)
출연금	경기도	74,000	35,000	39,000	

□ 관계법령발체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융자금 등
 4. 그 밖의 수입금
-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농업축산위생과]

□ 제안이유

-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10,000천원을 출연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령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조성)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와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융자액 : 농가 6천만원 이내, 농업법인 2억원 이내
 -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출자·출연기관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산출근거)
출연금	경기도	10,000	10,000	-	

☐ 관계법령발체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주거기본법」의 주거지원 필요계층 확대를 위하여 지원 대상 및 사업을 추가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를 청년 및 신혼부부까지 확대(안 제2조제2호)
- 나. 주거복지사업에 주택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규정(안 제7조제6호)

.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
부

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 ----- -----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u><신설></u>	<u>바.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u>
<u><신설></u>	<u>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u>
<u>바. (생략)</u>	<u>아. (현행 바목과 같음)</u>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u>6.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u>
<u>6. (생략)</u>	<u>7. (현행 제6호와 같음)</u>

주거기본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1호, 2021.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0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23.>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주거복지사업 중 신혼부부 · 청년 전 · 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발생
- 관련 조문: 조례(안) 제7조(주거복지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함
- 매년 무주택 신혼부부 · 청년 4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 최대 1,000천 원 지원을 전제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입	◦ 지 방 세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소계(a)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세출	◦ 신혼부부 주거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소계(b)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 총 비용(a-b)		0	0	0	0	0	0

4. 작성자(부서) 의견 : 특이사항 없음.

5. 작성자 : 복지정책과 과장 진영호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40가구 × 1,000천 원 × 5년 = 200,000천 원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시행 2021. 7. 29.]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209호, 2021. 7. 29., 제정]

경기도 동두천시(복지정책과), 031-860-237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주거종합계획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동두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사업 계획 및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실태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8.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법 제20조제4항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등의 연계

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5.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주거복지 위원회) ①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주거복지센터)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0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21. 7. 29. 조례 제2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인회관 건립(사회복지과) : 취득
○ 장애인회관 건립(사회복지과) : 취득
○ 시청사 제3별관 증축(회계과) : 취득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분	취득면적	취득금액	취득시기	부서명
계	토지 2필지, 건물 3동 (7,692㎡, 23,717백만 원)				
노인회관 건립	토지	2,146㎡	4,363백만 원	2023. 2.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건물	1,188㎡	4,748백만 원	2024. 12.	
장애인회관 건립	토지	1,342㎡	2,754백만 원	2023. 2.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건물	1,188㎡	4,752백만 원	2024. 12.	
시청사 제3별관 증축	건물	1,828㎡	7,100백만 원	2025. 7.	회계과 (재산관리팀)

□ 노인회관 건립 : 사회복지과

○ 사업개요

- 소재지 : 생연동 511-1번지(舊 신흥유치원 일원)
- 사업기간 : 2022. 10. ~ 2024. 12.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146㎡, 건물 1동(연면적 1,188㎡, 지상 3층)
- 사업비 : 9,111백만 원(전액 시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민선8기(노인회관 건립) 추진
- 현 (사)대한노인회 동두천노인지회 위치는 동두천노인복지관 내 1층 사무실로 일부분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확대되어 가고 있는 노인관련 사업 대비 공간적 제한이 있는 상황임.
- 이에, 초고령사회(동두천 노인인구 21.6%)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 및 시설 이용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 취득대상 재산

(단위: ㎡, 백만 원)

번호	구분	소재지	면적	금액	취득방법	비고
계		토지 1필지, 건물 1동	3,334	9,111		
1	토지	생연동 511-1	2,146	4,363	매입	감정평가 예정
2	건물	생연동 511-1	1,188	4,748	신축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7. : 민선 8기 공약 이행 관련 노인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22. 8. :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 2022. 10. : 제5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토지매입 감정평가 실시 및 매매계약
- 2022. 12.~2023. 2. : 토지매입대금 납부 및 토지매입 완료
- 2023. 2. :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등
- 2023. 7.~2024. 12. : 착공 및 준공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 장애인회관 건립 : 사회복지과

○ 사업개요

- 소 재 지 : 부산동 405-3번지
- 사업기간 : 2022. 10. ~ 2024. 12.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42㎡, 건물 1동(연면적 1,188㎡, 지상 3층)
- 사 업 비 : 7,506백만 원(전액 시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민선8기 제20대 동두천시장 공약사항 중 장애인 전용시설 확충 방안으로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함.
- 장애인단체 사무실 8개소가 현재 분산되어 있고 건물이 노후되어 운영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며,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시설 3개소(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도 장애인회관 건립 시 함께 사무실 이전이 필요함.

○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 취득대상 재산

(단위: ㎡, 백만 원)

번호	구분	소재지	면적	금액	취득사유	비고
계		토지 1필지, 건물 1동	2,530	7,506		
1	토지	부산동 405-3	1,342	2,754	매입	감정평가 예정
2	건물	부산동 405-3	1,188	4,752	신축	설계용역비, 건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7. : 민선 8기 공약 이행 관련 장애인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22. 8. :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 2022. 10. : 제5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토지매입 감정평가 실시 및 매매계약
- 2022. 12.~2023. 2. : 토지매입대금 납부 및 토지매입 완료
- 2023. 2. :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등
- 2023. 7.~2024. 12. : 착공 및 준공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시청사 제3별관 증축 : 회계과

○ 사업개요

- 소재지 : 생연동 438번지(동두천시청사 부지 내)
- 사업기간 : 2022. 9.~2025. 7.
- 사업규모 : 건물 1동(연면적 약 1,828㎡, 지상 1~3층)
- 사업비 : 7,100백만 원(전액 시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그간 추진해 온 조직개편에 따라 국장실 설치, 과 신설 및 통폐합 등으로 사무실 배치 조정하였으나 현재 사무공간은 포화상태임.
- 본관 지하층에 위치한 노조사무실,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등은 건물 노후화, 온·습도 유지곤란 및 누수발생에 따라 실내환경이 좋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있음.
- 민원 대기공간(접견실), 휴게 및 회의 공간 부족 등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환경으로 사무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함임.

○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 취득대상 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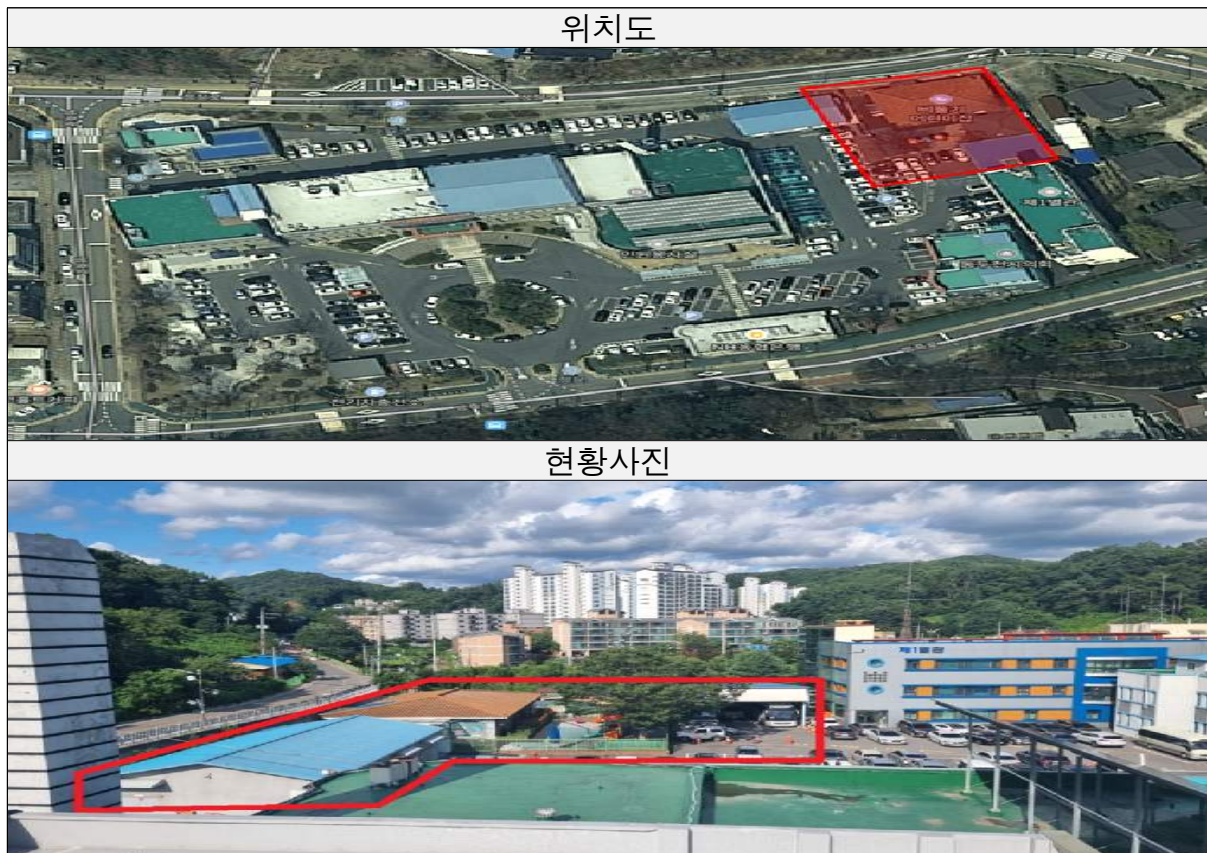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번호	구분	소재지	면적	금액	취득방법	비고
계		건물 1동	1,828	7,100	증축	
1	건물	생연동 438	1,828	7,100	증축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9. : 시청사 제3별관 증축 기본계획 수립
- 2022. 10. : 제5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 2023. 1. : 건축기획 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 2023. 2. :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 2023. 4. : 공공건축 사전검토(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동두천시 공공건축심의회)
- 2023. 5. : 청사 증축 설계안 공모
- 2023. 9. : 시청사 제3별관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
- 2024. 3. : 실시설계 용역 완료(각종 인허가 포함)
- 2024. 4. : 경기도 계약심사 및 시공사 선정
- 2024. 6.~2025. 7. : 착공 및 사업완료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2023년도 관리계획서(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m², 백만 원)

구 분			신규(취득처분)			변경(취득처분)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 득	계	토지	2	3,488	7,117				2	3,488	7,117	
		건물	3	4,204	16,600				3	4,204	16,600	
		기타										
	1.매 입	토지	2	3,488	7,117				2	3,488	7,117	
		건물										
		기타										
	2.교 환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3	4,204	16,600				3	4,204	16,600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교 환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기 타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번호	재 산 표 시			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구분	소재지	면적				
계	토지	2필지	3,488	7,117			
	건물	3동	4,204	16,600			
1	토지	생연동 511-1	2,146	4,363	2023. 2.	노인회관 건립 (사회복지과)	정기분
	건물	생연동 511-1	1,188	4,748	2024. 12.		
2	토지	보산동 405-3	1,342	2,754	2023. 2.	장애인회관 건립 (사회복지과)	정기분
	건물	보산동 405-3	1,188	4,752	2024. 12.		
3	건물	생연동 438	1,828	7,100	2025. 7.	시청사 제3별관 증축 (회계과)	정기분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번호	재 산 표 시			금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비고
	구분	소재지	면적				
계			해	당	없	음	
1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황주룡 의원)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 10.

발 의 자 :

□ 개정 이유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2020.2.4. 제정) 및 일부개정(2020.12.8.)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골목상권 활성화 내용을 반영하여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조례명 변경
- 나. 종합지원계획 수립 및 소상공인 지원 (안 제6조 ~ 제16조)
- 다. 골목상권육성구역 지정 및 지원 (안 제17조 ~ 제24조)
-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25조 ~ 제28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소상공인기본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현행조례

☐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상인”이란 특정 상가지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특정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

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
5.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66조에 따라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6. “골목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제외한 상점가 또는 특화거리 등을 말한다.
7. “골목상권육성구역(이하 ‘상권육성구역’이라 한다)”이란 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8.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이하 “서민금융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9. “특례보증”이란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없거나 지원하기 곤란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보증제도를 말한다.

10.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동두천시 (이하 “시”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11. “신용보증 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제6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 3년마다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5. 상권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전략
6. 대규모 점포 입점, 신규상권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
7. 미래 환경변화 및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방안
8.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 보호·육성 및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

에 대상사업, 한도 및 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의 생산제품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
4.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인테리어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5.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운영 및 홍보 마케팅 사업
6.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미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카드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이하 “카드수수료”라 한다)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

③ 시장은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한 카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을 원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

다.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2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이 용자받은 대출금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상공인 용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자 상환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3조(지원제외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4. 상환금 등을 3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부터 제12조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연합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소상공인의 날)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 혁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골목상권육성구역 지정 및 지원

제17조(상권육성구역 지정) ① 시장은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상권육성구역 지정신청)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권육성구역 지정 신청서
2.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19조(상권육성구역 지정기준 등) 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이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점포가 30개 이상일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할 것

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의 특성과 역사성
2. 상권의 규모와 발전가능성
3.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
4.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5.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③ 시장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상권육성구역 변경 및 지정취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상권육성구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상인조직이 해산되었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 위생, 품질 등에 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7. 당초 가입 점포수의 1/2이하가 된 경우
8. 제23조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9.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

제21조(상권육성구역의 지원) ①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별 특화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2.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3. 매출증대를 위한 행사·축제,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
4. 제22조에 따른 빈 점포 활용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권육성구역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기

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2조(상권육성구역의 빈 점포 활용지원) 시장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상권육성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공간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장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장
4. 농축산 직영매장
5.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 공간
6. 그 밖에 상권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23조(상권육성구역 사업평가) ①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 성과를 3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업

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의 종합지원계획
2. 제7조의 실태조사
3. 제8조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4. 제22조의 상권육성구역의 빈 점포 활용지원
5. 제23조의 상권육성구역 사업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장 위원회 등

제2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권육성구역 지정·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5. 상권육성구역 지원 및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동두천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상권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학계 전문가
5. 유통·마케팅 관련 전문가
6. 건축·공공디자인·도시계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2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
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회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포상) 시장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25

제1조(목적)이 법은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소상공인법)

[시행 2021. 10. 8.] [법률 제18292호, 2021. 7. 7.,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25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 12. 31.>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26조(지도·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제27조(행정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9.]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2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소상공인연합회 회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5. 5. 28., 2020. 2. 21.>

② 연합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로 한다.<개정 2014. 8.

27., 2015. 5. 28., 2017. 2.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다.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

2. 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3.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소상공인 등을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2. 20.>

④ 연합회의 정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의 자격

6. 회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除名)

7.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정수(定數)와 그 선임(選任) 방법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경비의 부담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2. 사업연도

13. 해산 사유

14. 공고 방법

②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절차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4. 8. 27.>

제4조(발기인)연합회를 설립하려면제2조 제2항에 따른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인·조합 및 단체 20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제5조(창립총회)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 개최일 2주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일시·장소 및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

2. 사업계획의 설정

3. 그 밖에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④ 창립총회의 의결은 연합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합회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

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6조(의사록)①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허가)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0. 2. 21.>

1. 발기인 및 동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名簿)

2. 회원의 명부

3. 창립총회 의사록

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 정관

6. 사업계획서

7. 재산 명세서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발기인 중 제6조 제2항에 따른 의사록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의 과반수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2. 2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8조(운영의 공개) ① 연합회는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야 한다.

② 연합회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육성과), 044-204-7891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승인·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

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 제2항](#)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 4. 20.>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6. 12.>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2021. 4.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 1. 8.>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 8.>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8.>

[전문개정 2010. 6. 8.]

제66조(상인연합회) ①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조합·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 7. 26.>

1.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활성화
2.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공동 상품개발과 판로 확보
3.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구매·판매 및 물류에 관한 공동사업
4.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연합회의 회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어나 직원 중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⑧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⑨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6. 8.]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145호, 2020. 6.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에 영업 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의 날)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와 사회적·경제적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의 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시 시책 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사업
3. 지원 한도 및 조건
4.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규모 시설개선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1항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동두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2. 동두천시의회 시의원

3.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4.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회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자문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이자보전)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특례보증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2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2조(지원대상)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2.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3.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제한 하는 업종

제13조(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8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2.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3.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5.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6. 9. 28.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1. 조례 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김재수 의원)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 10.

발 의 자 :

☐ 제정이유

- 동두천시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여 각종 행사개최와 편의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함께 학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젊고 활기찬 청소년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나. 용어에 관한 정의 (안 제2조)
- 다.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지정 (안 제3조)
- 라. 청소년의 날 운영 범위 및 내용 (안 제4조)
- 마.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청소년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관계법령발체서 : 불임

-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에 따라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제4조(운영 등)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지원 등)

1.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동두천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시장은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전문개정 2011. 11. 1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임현숙 의원)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 10.

발 의 자

:

☐ 제정 이유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동두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함 (안 제1조~제2조)
- 나. 기본원칙에 대하여 정함 (안 제3조)
- 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정함 (안 제6조)

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대하여 정함 (안 제8조~제10조)

마. 민주시민교육 위탁에 대하여 정함 (안 제11조)

바.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정함 (안 제12조)

사. 이수증 발급에 대하여 정함 (안 제13조)

아. 교류 및 협력에 대하여 정함(안 제14조)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교육기본법

○ 평생교육법

☐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 참고사항 : 불임

○ 경기도 내 조례 현황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동두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

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

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인력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민주시민교육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시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등 공공시설물에 “민주시민교육학습장” 등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강당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 (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
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
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
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
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기준일 : 2022. 8. 5.

연번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제정(개정)일자	비 고
총계	25			
1	경기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 10. 1.	
2	가평군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21. 2. 15.	
3	고양시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 7.	
4	광명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 6. 25.	
5	광주시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민주시민교육을 삽입)	2020. 5. 15.	전부 개정
6	구리시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 6. 20.	
7	군포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 4. 18.	
8	남양주시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8. 12. 27.	
9	성남시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 7. 15.	
*	성남시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민주시민교육을 삽입)	2020. 11. 2.	병합
10	수원시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8. 2. 12.	
11	시흥시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민주시민교육을 삽입)	2018. 11. 9.	개정
12	안산시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 10. 2.	
13	안양시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 11. 15.	
14	양주시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8. 10. 30.	
15	양평군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 12. 26.	
16	여주시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20. 6. 15.	
17	연천군	연천군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	2019. 9. 25.	
18	용인시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18. 12. 14.	
19	의왕시	의왕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21. 9. 28.	
20	의정부시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7. 11. 15.	
21	이천시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 5. 8.	
22	파주시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8. 9. 28.	
23	포천시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 5. 22.	
24	하남시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7. 12. 27.	
25	화성시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19. 5. 24.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 : 임현숙 의원)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 11.

발 의 자

:

☐ 수정이유

-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자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명과 조문을 수정하였음.

☐ 수정의 주요내용

- 헌법에 기초한 자유의 내용을 반영하여 「동두천시 자유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명 변경 및 조문 수정.

☐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붙임

☐ 수정안 조문대비표 : 붙임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동두천시 자유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민주시민교육”을 “「교육기본법」에 따라 자유민주시민교육”으로, “민주시민으로서”를 “자유민주시민으로서”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한다.

제2조 중 ““민주시민교육”이란”을 ““자유민주시민교육(이하 “시민교육”이라 한다)”이란”으로, “민주주의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민주주의를”을 “자유민주주의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시민교육은 자유민주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을 “시민교육은 시민의 자유민주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민주시민교육은 학문 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을 “시민교육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민주시민교육”을 “시민교육”으로 한다.

제4조 중 “민주시민교육”을 “시민교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민주시민교육의”를 “시민교육의”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화”를 “시민교육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주시민교육”을 “시민교육”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자유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주시민교육의”를 “시민교육의”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시민교육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민주시민교육”을 각각 “시민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민주시민교육 인력”을 “시민교육 인력”으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시민교육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민주시민교육”을 각각 “시민교육”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을 “(자유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주시민교육”을 “시민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나눔, 다양성 존중 등”을 “나눔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민주시민교육”을 각각 “시민교육”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을 “(자유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주시민교육에”를 “시민교육에”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자유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민주시민교육”을 각각 “시민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회”를 “1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민주시민교육”을 “시민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민주시

민교육자문위원회”를 “자유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민주시민교육 위탁)”을 “(자유민주시민교육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주시민교육의”를 “시민교육의”로, “민주시민교육이”를 “시민교육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주시민교육”을 “시민교육”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민주시민교육”을 “제11조에 따른 시민교육”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을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한다.

1.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2. 공유재산 등 공공시설물의 이용 지원

제13조 중 “민주시민교육에”를 “시민교육에”로,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시민교육이수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민주시민교육”을 “시민교육”으로 한다.

제15조 중 “민주시민교육”을 “시민교육”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u>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u> <u>조례안</u>	<u>동두천시 자유민주시민교육에</u> <u>관한 조례안</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민주시민</u> <u>교육</u>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동두천시민이 <u>민주시민으로서</u> 지녀야 할 권리 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u>민주주의</u>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민주시</u> <u>민교육</u>”이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u>민주주의</u> <u>사회</u>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 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 의 각 영역에서 <u>민주주의</u>를 실 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 의 교육을 말한다.	제1조(목적) ----- 「<u>교육기</u> <u>본법</u>」에 따라 <u>자유민주시민교</u> <u>육</u>----- <u>자유민주시민으로서</u> ----- ----- ----- <u>자유민주주의</u>----- -----. 제2조(정의) ----- “<u>자유민</u> <u>주시민교육</u>(이하 “<u>시민교육</u>”이 라 한다)”이란 --- <u>자유민주주</u> <u>의 사회</u>----- ----- ----- <u>자유민주주의</u> <u>를</u> ----- ----- -----.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

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
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
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
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
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
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
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
론 및 관점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
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
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
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
져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민교육은

자유민주주의-----

-----.

② 시민교육은 시민의 자유민주
적 -----

-----.

③ 시민교육은 -----

-----.

④ 시민교육-----

-----.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동두천시
 (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
 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
 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
 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
 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
 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
 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
 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제4조(적용대상) -----
시민교육 -----

 -----.

제5조(시장의 책무) ① -----

 ----- 시민교육의 -----
 ----- 시민교
 육 활성화-----
 -----.

② ----- 시민교육-----

 -----.

제6조(자유민주시민교육 종합계
 획 수립) ① -----
 ----- 시민교육의 -----
 ----- 시민
 교육 종합계획-----
 -----.

② -----

 -----.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인력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
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
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
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
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
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
민교육 활동 방안에 관한 사
항
7.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
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

1. 시민교육-----

2. 시민교육 -----

3. 시민교육 -----

4. 시민교육 인력 -----
시민교육 사업-----

5. 시민교육 -----

6. -----
----- 시민교
육 -----

7. ----- 시민교육-----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
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
본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
에 관한 교육
3. (생략)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
치에 관한 교육
5. (생략)
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
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
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

제7조(자유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시민교육-----
-----.

1. -----
----- 자유민주주의-----

2. 자유민주주의-----

3. (현행과 같음)
4. -----
나눔 등-----

5. (현행과 같음)
6. ----- 시민교육-----

② 시민교육-----

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
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하여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자
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생략)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
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
당 부서장

-----.

제8조(자유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
회 구성) ① -----

시민교육에 -----

----- 자유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시민교육-----

3. 시민교육 -----

4. 시민교육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민주시민교육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④ -----
----- 1회 -----
-----.

⑤ -----

-- 시민교육 -----
-----.

⑥ -----

----- 자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
-----.

제11조(자유민주시민교육 위탁)

① -----
--- 시민교육의 -----
----- 시민교육이 -----

-----.

② ----- 시민교육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시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등 공공시설물에 “민주시민교육학습장” 등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강당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
제11조에 따른 시민교육 -----
-----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
-----.

1.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2. 공유재산 등 공공시설물의 이용 지원

<삭 제>

<삭 제>

④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 (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② (생략)

제15조(표창)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

제13조(이수증의 발급) ---- 시민교육에 -----
----- 시민교육이수증-----
--.

제14조 (교류·협력 등) ① -----
시민교육-----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표창) ----- 시민교육---

-----.

동두천시 자유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자유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동두천시민이 자유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유민주시민교육(이하 “시민교육“이라 한다)”이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민교육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교육은 시민의 자유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교육은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시민교육 대상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유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민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자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시민교육 인력 양성 등 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시민교육 활동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유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

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자유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그 밖의 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자유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자유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자유민주시민교육 위탁) ① 시장은 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2. 공유재산 등 공공시설물의 이용 지원

② 제1항제1호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 (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시장은 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27.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2. 11. 1.

다. 상정일자 : 제31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8차 본회의 심의

제9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나. 주요내용

○ 대상목록

부서명	사업명	출연근거	출연 기관	예산액(천원)		
				2023	2022	증감
계	6개			640,196	550,449	89,747
세무과	지방세 발전기금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한국 지방세 연구원	6,196	5,449	747
일자리경제 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 제7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 례」 제6조	경기신용 보증재단	300,000	500,000	△200,000
	중소기업 특례보증		경기신용 보증재단	200,000	0	200,000
	소상공인중 소기업특례 보증수수료		경기신용 보증재단	50,000	0	50,000
	중소기업 육성기금		경기도	74,000	35,000	39,000
농업 축산 위생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 금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경기도	10,000	10,000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의 논리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특례보증,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출연에 따른 사업성과 및 사업수혜도 등을 분석하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 홍보 및 추진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1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출연에 따른 농업인들의 수혜 확대를 위해 홍보 등 사업추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사업성과 및 사업수혜도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27.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2. 11. 1.

다. 상정일자 : 제31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8차 본회의 심의

제9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주거기본법」의 주거지원 필요계층 확대를 위하여 지원 대상 및 사업을 추가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를 청년 및 신혼부부까지 확대(안 제2조)
- 주거복지사업에 주택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주거지원 필요계층 확대를 위하여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를 「동두천시 청년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까지 확대하여 주택융자금 이자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 되며,
- 다만, 조례 시행시 대상자 선정에 따른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수부여 등 시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27.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2. 11. 1.

다. 상정일자 : 제31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8차 본회의 심의

제9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노인회관 건립 : 사회복지과

- 소 재 지 : 생연동 511-1번지(舊 신흥유치원 일원)
- 사업기간 : 2022. 10.~2024. 12.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146㎡, 건물 1동(연면적 1,188㎡, 지상 3층)
- 사 업 비 : 9,111백만 원(전액 시비)

2) 장애인회관 건립 : 사회복지과

- 소 재 지 : 보산동 405-3번지
- 사업기간 : 2022. 10.~2024. 12.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42㎡, 건물 1동(연면적 1,188㎡, 지상 3층)
- 사 업 비 : 7,506백만 원(전액 시비)

3) 시청사 제3별관 증축 : 회계과

- 소 재 지 : 생연동 438번지(동두천시청사 부지 내)
- 사업기간 : 2022. 9.~2025. 7.
- 사업규모 : 건물 1동(연면적 약 1,828㎡, 지상 1~3층)
- 사 업 비 : 7,100백만 원(전액 시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노인회관 건립의 건은 (사)대한노인회 동두천노인지회가 동두천노인복지관 내 1층 사무실로 일부분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노인관련 사업 대비 공간적 제한이 많아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 및 시설 이용에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여 신축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 신축의 필요성과 토지매입의 적정성 등을 신중히 판단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장애인회관 건립의 건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8개소가 현재 분산되어 있고 건물이 노후되어 운영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며,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도 사무실 여건 등이 열악하여 이주가 필요하고, 동두천시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여 신축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 신축의 필요성과 토지매입의 적정성 등을 신중히 판단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시청사 제3별관 증축의 건은 조직개편에 따라 국장실 설치, 과 신설 및 통폐합 등으로 현재 사무공간이 포화상태이며, 본관 지하층에 위치한 노조사무실,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등은 건물 노후화, 온·습도 유지곤란 및 누수발생에 따라 실내환경이 좋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있고, 민원 대기공간(접견실), 휴게 및 회의 공간 부족 등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환경으로 사무공간

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여 신축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민원인의 편의증진 및 상주직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의견으로 시청사 뒤편 주차장 부지를 주차가 가능한 형태로 신축하여 공간 확대를 통해 좀 더 좋은 업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다각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27. 황주룡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2. 11. 1.

다. 상정일자 : 제31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8차 본회의 심의

제9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2020.2.4. 제정) 및 일부개정(2020.12.8.)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골목상권 활성화 내용을 반영하여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조례명 변경
- 종합지원계획 수립 및 소상공인 지원 (안 제6조~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27. 김재수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2. 11. 1.

다. 상정일자 : 제31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8차 본회의 심의

제9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여 각종 행사개최와 편의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함께 학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젊고 활기찬 청소년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지정 및 운영 범위 및 내용(안 2조~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여 각종 행사개최와 편의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함께 학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젊고 활기찬 청소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활동 증진에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27. 임현숙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2. 11. 1.

다. 상정일자 : 제31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8차 본회의 심의

제9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동두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함 (안 제1조~제2조)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정함 (안 제6조)
-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에 대하여 정함 (안 제8조~제10조)
- 민주시민교육 위탁에 대하여 정함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정함 (안 제11조~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 평생교육원에서 민주시민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에서는 본 조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 정치적 의견, 종교의 설파 등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정답은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은 발표자의 지식을 전달 및 강요하는 것이 아닌, 수강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스스로가 고민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대화가 진행될수록 심화 되어 가고 있는 “나” 중심의 사고를 극복하고 소통과 공감, 협동을 통해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회의록 참조”(별송)

6. 심사결과

“수정가결” -수정안 별첨